

2024년도 제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3. 20. 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강태욱(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상수, 김춘식, 정경오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2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81건(안건번호 제2024-15829호~1720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15829호~15832호(순번 1번~4번)은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에 방송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15833호~15853호(순번 5번~25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15834호~17209호(순번 26번~1381번)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

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강태욱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2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강태욱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을 전부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태욱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34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4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 카페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하여 ‘□□□□□ □□□’ 등 영상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2, 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모니터링 자료를 보여주면서) 순번 2번 '■■■■■■ ■■■'는 '○○○○○○○○'의 최신 시리즈에 해당하는 저작물임. 순번 4번 '♀♀♀♀♀♀♀♀♀♀♀♀♀♀' 저작물은 국내에 수입됐던 본편 드라마 '★★★ ★★'와 상당히 내용이 상당히 밀접하고 분량이 상당한 점, 그리고 아직 국내에 개봉되지는 않았지만 본편 시리즈가 국내에 꾸준히 수입됐던 만큼 잠재적 시장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안전으로 상정함.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모두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임.
- A 위원: 순번 2번과 4번은 각기 다른 드라마인가.
- 박현주 전문위원: '■■■■■■■■ ■■■' 시리즈, '★★★★★★ ★★' 시리즈는 각각 다른 시즌의 드라마임.
- 강태욱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의결해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번~2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 '◇◇◇◇'와 ●●● 카페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28개 게시물임. (순번 8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채증 자료를 보시게 되면 PDF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함.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 등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임.

- 박현주 전문위원: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웹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불법복제물의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 대상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번~2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26번~138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843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8번은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2024. 1. 4. 극장 개봉되어 현재 일부 상영 중이며, 웹하드에서 124분 전체분량을 2360개시에 판매중인 사안임.
(영화 ‘마담 웹’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77번은 영화 ‘마담 웹’는 2024. 3. 13. 극장 개봉되어 현재 상영 중이며, 웹하드에서 117분 전체분량을 다운로드하여 상영 가능한 사안임.
(만화 ‘학대받던 추방왕녀는 전생한 전설의 마녀였습니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374번은 만화 ‘학대받던 추방왕녀는 전

생한 전설의 마녀였습니다'는 2024. 2. 17. 발행된 만화책으로 웹하드에서 1권(1~6화) 전체 분량을 50포인트에 판매중인 만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동조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강태욱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6번~1381번은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15829호~17209호(순번 1번~1381번)는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 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강태욱 분과위원장이 제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3. 27.

분과위원장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김상수

위원 김춘식

위원 정경오